

9. 滑材採取法施行令(案) 및 同施行規則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제1992-62호 1992. 5. 26

1. 制定취지 및 주요내용

골재채취법시행령(안)입법예고

가. 制定취지

골재채취법이 제정(1991. 12. 14. 법률 제4,428호)됨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, 골재채취허가제한지역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은 지역별·골재원별·연차별 조사계획을 수립토록 하되, 골재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골재자원개발에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함.
- (2) 골재채취법에 의하면 골재에 대한 조사업무와 채취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, 기초조사업무 및 골재채취지원업무를 대한광업진흥공

사와 한국자원연구소등이 실지조사업무는 국토개발연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.

- (3) 인접 시·도로부터 연간 50퍼센트 이상의 골재를 공급받는 경우 골재수급계획, 골재원별 개발계획, 비축기지 운용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서로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.
- (4) 건설부장관은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구조의 개선, 운송대책의 강구,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의 집행시기의 조정, 주택건설물량의 시기별·지역별 조정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, 특히 골재수급불균형이 심각하여 골재가 격이 상승하거나 공사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골재의 집중개발 및 비축명령을 하고 집중개발 및 비축용 골재에 대하여는 타 사업용에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함

- (5) 골재수급기본계획, 연도별 골재수급계획,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골재수급대책위원회는 경제기획원, 내무부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시·도의 1 내지 3급공무원과 환경 및 지질관련 분야의 대학교수로서 구성함.
- (6) 골재채취업등록기준은 골재원별로 차등을 두어 자본금은 3억원 내지 15억원(개인의 경우에는 6억원 내지 30억원)으로 정하고 로우더, 굴삭기, 염분측정시설등 장비를 갖추도록 함.
- (7) 1,000세제곱미터 이하의 재해복구용 및 군사시설용, 하천 및 정비사업용, 도로의 유지보수용 골재와 200세제곱미터 이하의 마을단위의 공익사업 및 농약 또는 의약품료용 골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도록 함.
- (8) 자연생태계보전지역, 자연보존지구, 농지개량시설 및 그 유역과 지정문화재, 국방시설, 수산자원보전지역, 육성수면등으로부터 일정거리내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.
- (9) 골재채취허가기간은 하천, 바다, 육골재의 경우에는 5년이내, 산림의 경우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정

하도록 함.

- (10)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1,0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함.
- (11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에게 인접주민의 보건환경을 위한 소음·분진방지시설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- (12)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되면 시·도지사는 제방축조 및 보강, 인접주거지역에 대한 보건환경대책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단지내에 광업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.

골재채취법시행규칙(안)입법예고

가. 제정취지

골재채취법이 제정(1991. 12. 14. 법률 제4,428호)됨에 따라 골재채취법 및 동법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매월 골재채취현황을 다

음달 5일까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.

- (2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복구계획서에 의한 복구비의 120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, 예치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9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.

2. 의견제출

이 제정(안)에 대하여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건설경제과장 주소: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500-290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